

스웨덴 한인중앙회 회칙(안)

제1조 조직과 명칭

본회는 다음의 조직과 명칭을 갖는다

1. 스웨덴한인중앙회, (Koreanska Foreningen i Sverige)라 칭하고, 지역 한인회를 둘수 있다
(단, 지역한인회는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할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명이상) 요테보리.말뫼.웁살라.노르쇠핑.외레브로.)
(스톡홀름한인회)

제2조 목적

본회는 한인사회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문화 창달 및 융화단결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역 및 사무소

1. 본회의 관할 지역은 스웨덴 전역으로 한다
2. 본회는 한인 사회의 직능 기타 제 단체를 대표한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스톡홀름 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의 제2조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업무를 추진한다

1. 한인의 권리 수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사업
2. 한인의 차세대교육 및 체육에 관한 사업
3. 한인 문화 창달과 한인 전통을 유지하는 사업
4. 한인 복지 후생에 관한 사업
5. 한인사회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사업
6. 한인 교포 및 입양인을 위한 제반 봉사 사업
7. 기타사업

제5조 자격

1.정회원

스웨덴에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해당하며 스웨덴에 거주허가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18세이상인 자를 정회원 자격으로 규정한다 (투표권과 발언권이 있음)

2.준회원

스웨덴에 일시적인(3년이하) 목적으로 거주허가를 받은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대사관직원 상사직원 입양동포(시민권자)를 준회원 자격으로 규정한다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음)

제6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신회원은 총회 3개월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수익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으로 스웨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7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이사 7명 이내를 지명한다 (위촉)
2.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를 지명한다 (위촉)
3.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 한다
4. 회장은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단:고문, 자문위원 및 감사는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8조 임 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한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발생 할 경우) 경우 회장이 재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며,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직 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각 전담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단체, 대 스웨덴정부, 문화, 교육, 경제, 사회, 체육, 여성, 종교, 노인, 차세대 등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한인회의 재산 상황 및 결산 심사를 행한다

제9조 기구

본 회에 총회, 임원회 및 기타 기구를 둘 수 있다 (삭제)

제10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50명(30명.40명) 이상의 정회원출석으로 성립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으로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0 (30.40명)명 이상의 정회원이 서면 요청이 있을때 안건이 명시된 내용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5. 회장은 1년 이내에는 총회에서 해임 할 수 없다

제11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선출. 및 퇴출
2. 사업 및 결산보고
3. 회칙 제정 및 개정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위원 3명을 둘 수 있다)
4. 모든 의결은 정회원 출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기타 사항

제12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재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도 가능하다)

제13조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촉받은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에 수반된 규칙,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단:제반사항을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사항

제14조 선거 관리

1. 선거는 회장이 위촉한 선거관리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시 필요할 경우(삭제)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선출한다)
3. 투.개표시 각 후보자가 지명한 검표위원 1명이 참여 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 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회장 입후보 자격

1. 만 3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35세 이상.40세.50세.한인회 임원을 역임한자)
2. 대한민국 법 또는 스웨덴 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년 이상이 경과 하여야 한다
3. 회장입후보자는 한국어를 필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단일 후보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재 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단,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제의,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19조 회관 기금 관리

1. 회관건립위원회는 한인회 산하단체이다
2. 회관의 건립, 임대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관 기금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3. 위원의 위촉, 정족수 및 임기는 총회에서 정하며 회장단의 임기나 고유 업무와는 별도로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참고:임기건)

제20조 징 계

본회는 고의 행위로 본 회를 모독하는 행위나 교포사회 발전에 현저한 과오를 범한 경우, 1차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자진사퇴를 권고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는 총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21조 포 상

본회는 임원회의 의견을 모아 교포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자체 포상하거나 모국 정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 감 사

감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회계감사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하며 회계보고는 항목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발효

본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1차 개정 본회칙은 1990년 12월 08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 2차 개정 본회칙은 1994년 12월 16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 3차 개정 본회칙은 2001년 12월 15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 4차 개정 본회칙은 2004년 10월 30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 5차 개정 본회칙은 2010년 1월 16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 6차 개정 본회칙은 2012년 2월 18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 7차 개정 본회칙은 2019년 월 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